

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13호의8서식] <신설 2025. 12. 29.>

화물운송 종사자격증(모바일)

(앞쪽)

(뒤쪽)

화물운송 종사자격증(모바일)	
성 명: 생년월일: 자격증번호: 자격취득일:	사진 2.5cm×3cm
위의 사람은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.	
년 월 일	
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직인	

85mm×54mm(백상지 150g/m²)

화물운송 종사자 유의사항
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이 자격증을 관할관청에 반납해야 합니다.